

“법원구성원 근무조건 개선 분과위원회” 및 “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” 설치에 관한 제안

발의자: 김진석, 오승이, 윤준, 이광만, 이미경, 최한돈(가나다 순)

1. 결의사항

- 가.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“법원구성원 근무조건 개선 분과위원회”와 “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”를 둔다.
- 나. “법원구성원 근무조건 개선 분과위원회”는 전국법관대표회의,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에서 각 3인씩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, “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”는 전국법관대표회의,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하는 각 1인,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에서 추천하는 3인,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다. 분과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모두 대법원장이 임명하되, 위원장은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.
- 라.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.
- 마. 분과위원회의 업무는 별지 의견서상의 연구 내용을 참작하여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, 대법원장이 부의하거나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회부하는 안건은 우선하여 심의, 검토한다.

2. 제안배경

- 가.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(이하 ‘법원노조’라 합니다)에서 별지 의견서와 같이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안제출을 요청하여 왔습니다.
- 나. 법원노조에서 설치를 요청하는 분과위원회는 재판독립이나 법관독립과 직접적 관련성은 떨어지나 간접적 관련성은 충분합니다.
- 다. 법원공무원들에게도 사법행정참여기회를 보장하고, 사법행정기구를 구성함에 있어 그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※ 첨부: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서